

II - 4	제 목	공사업 등록기준(4)(출자금)		
회신일자	2003년 3월 29일	회신방법	산자부 사이버민원실	
의요지				
질의) 전기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전기공사업등록과 전기공제조합에서 출자금 확인하여야 공사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비용과 출자금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마치고 출자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였던 바, 산자부에서 대표자 담보가 아닌 법인부동산이 있어야 보증보험증권이 발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결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선처 바랍니다.				

신 내 용

답변)

- 자본금확인서 발급제도는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적정자본금 확보 및 법정 자본금의 지속적인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과 전기공사업계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2001년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등록기준 자본금을 2억으로 조정하고 그 중 25%이상을 지정기관에서 확인 받도록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00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음에 있어서 제3자 담보제공을 통한 자본금확인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본금확인서 발급제도의 입법취지는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중 일정금액의 실제 유지능력을 확인하고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의 담보설정은 부실·부적격업체(핸드폰·페이퍼컴퍼니 등)가 타인 자본을 일시적으로 이용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통한 건전한 시장육성이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법인 대표자의 담보제공을 통한 법인명의로의 자본금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 또한 개인(대표자)의 자산은 법인의 자산이 아닌 제3자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이 담보대상이 되는 물건을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이를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